

1. 개정이유

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4조 제3항, 제4항 및 같은 법 제60조의5가 신설(2020. 12. 29. 신설 2021. 6. 30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방안 마련

- 1)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입소자 장례 이행 및 비용 처리 근거 마련

나.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

- 1)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유류재산 평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사용 잔액은 공고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귀속, 장애인 시설 및 이용자 지원에 활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)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례 비용 중당은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, 장례 방식은 사망자의 특별한 유언이나 유증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.

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각각 제44조의6 및 제44조의7로 하고,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5(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) ① 법 제60조의5제1항 단서의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은 사망 시점의 유류재산으로 현금, 예·적금, 현금성 자산, 부동산, 귀금속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망자의 잔여재산 평가액이 장례비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장례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잔여재산 목록과 장례비 사용내역, 장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

산 일체를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제출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0조의5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상속재산을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④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함)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<중전 제44조의5부터 제44조의6을 제44조의6부터 제44조의7로 하고 제44조의5는 다음과 같이 한다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1조의2(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)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례비용 중당은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장례절차와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, 장례 방식은 사망자의 특별한 유언이나 유증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.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<u><신 설></u>	제44조의5(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) ①법 제60조의5제1항 단서의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은 사망 시점의 유류재산으로 현금, 예·적금, 현금성 자산, 부동산, 귀금속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자의 잔여재산 평가액이 장례비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장례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잔여재산 목록과 장례비 사용내역,

<u>제44조의5</u> · <u>제44조의6</u> (생략)	<u>장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 일체를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제출한다.</u> <u>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0조의5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상속재산을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.</u> <u>④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함)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</u> <u><중전 제44조의5부터 제44조의6을 제44조의6부터 제44조의7로 하고 제44조의5는 다음과 같이 한다></u> <u>제44조의6</u> · <u>제44조의7</u> (현행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과 같음)
---	--